

第287回國會
(臨時會)

知識經濟委員會會議錄
(法案審查小委員會)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2月19日(金)

場 所 知識經濟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電氣工事共濟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
2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1.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52.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계속)
5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56.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계속)
5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4
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3.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10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10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	10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14
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14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
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18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래 의원 대표발의) …	18
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 …	18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2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성 의원 대표발의) …	18
2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18
24. 電氣工事共濟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	19
2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2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	20
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	21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 …	21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	21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 …	21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	21
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	21
5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	25
5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	25
59.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	26
6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27
6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	27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3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	28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4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21)(계속) …	28
4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4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4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4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4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4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5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
51.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52.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5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5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5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조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28
 56.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이시중 의원 등 61인 발의)(계속) 28

(14시12분 개의)

○소위원장 노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부 소관 법률안 중에서 제2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소위원장 노영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노영민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안에서는 전략물자 경유·환적 허가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노영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산업설비수출’ 용어를 ‘플랜트수출’로 변경하고 사문화된 국외취업자 모집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동의 규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만 자구정리 차원에서 정부의 플랜트수출 촉진책 중 ‘수주질서 유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규제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정부안에서는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규정을 하고 네 번째,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줍니다.

다만,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는 현행법 제33조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자와 판매업자는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문제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줍니다. 다만 이것과 이것 외에 뒤에서 보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도 이것과 맞춰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다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다만 현행법상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다양하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가능성도 있고 제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조속히 정비를 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과 같이 수정제의 하신 안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을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다양한 벌칙, 법에 따라서 다른 것도 조속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 제가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주질서의 유지’, 이게 산업설비 수출의 승인 등이라 하는 이 규제적 의미를 포함한다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정부안에서 ‘수주질서의 유지’를 넣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정부안에서.....

정부안이 아니라 노영민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건데요.

○이명규 위원 아, 노영민 의원님 안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런데 지금 우리 플랜트의 수출의 수주업체들이 상당히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과당경쟁이고.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대로 이걸 단정적으로 수주질서의 유지라는 걸로 정부가 너

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할 경우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 수용을 하자는 그런……

○**이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대기업에 말이죠, 과당경쟁 정도라면 문제 삼지 않겠는데 제가 보건대는 국익에 심대한 침해가 가져오는 그런 아주 소위 말하는 반국가적 행위들도 지금 대기업들이 서슴지 않고 하거든요.

저도 이걸 작년 국감 때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좀더 보완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차관님,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압니다.

○**이종혁 위원** 우리 대기업들끼리 경쟁하다가 무슨 카테고리만 좀 벗어나면……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다른 유의 외국계 기업들하고 서로 컨소시엄을 엮어 가지고 국내를 침해하고, 이렇게 치고…… 이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의 행위 자체를 감안한다 치면 예를 들자면 이 법 규정에는 나는 좀더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좀 일정한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 필요성에서 정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걸 노영민 위원님 제안대로 수주질서의 유지라는 항목을 집어넣어도 저희들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대외무역법 46조에 관련되는 정부의 수주 조정권한,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유사한 규정이,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주질서의 유지라는 규정을 여기다 명시적으로 박을 실익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명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주질서의 유지를 넣는 게 안 낫겠나, 뭐 수주질서를 유지할 방법도 없다 그러는데 그러나 이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뭐 상당히 법적인…… 우리지식경제부가 관여할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수정안에서 뺀 ‘수주질서의 유지’를

넣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혁 위원** 저도 이명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 정부, 동의합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수주질서의 유지’를 넣는 걸로 하죠.

수석님,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현행법상 수주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익이 없다는 측면 때문에 이렇게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수주질서 유지라는 걸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남겨 놓는 것은 하나의 의미도 있다고 보고……

○**이명규 위원** 그렇죠.

○**이종혁 위원** 그럼, 선언적 의미로도 박아놓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지정부가 좀더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국익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처리를 하세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저는 수정의견은 다 동의하는데 단 ‘수주질서의 유지’는 원안대로 있는 걸로 하고……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예,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19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에서는 법률제명을 ‘무역보험법’으로, 또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변경하고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에서 기금의 건전성 등에 대한 문제라든가 인력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량이 과다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이에 대해서는 기금건전성과 개별보험의 비중 또는 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상징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개정안에서는 또한 보험금 지급규정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국회 제출절차를 면제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그런 취지인 바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채권발행 근거규정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사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다양한 기금채원 마련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박순자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고 저희들 검토의견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기금채원 및 자체 수입원 확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수출보험공사명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체 위원회에서 브랜드가치를 상쇄하면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저희들 의견은 수출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기존 명칭의 인지도라든가 다른 국가의 사례 등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조항 정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조항 정비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공공법에 따라서 현재 법에 ‘7인 이내의 이사’를 ‘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작년 4월 달에 공공기관의 임원수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사의 임원 수에 대한 걱정 수에 대해서가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무역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피력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기본적으로 무역보험공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신 문제가 수출보험공사로 해 가지고 수출보험공사가 대외적으로 수출보험이라는 걸로 인지도가 있는데 그걸 굳이 지금 와 가지고 무역보험으로 바꿀 실익이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업무의 커버리지를 수출보험에서 수입도 커버할 실익이 있다는 건 콘텐츠 면에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수출·수입을 동시에 커버를 하게 되는 거고 또 대외 면에서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시작된 위기상황에서 우리 수출보험이 우리 수출증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한국이 너무 수출 드라이브로 해 가지고 아직도 그런 과거의 수출 주도정책을 피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 그런 측면도 고려한다면 차제에 수출과 수입을 다 커버하는 무역보험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일본에서도 사실 무역이라는 말을, 무역투자공사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명은 무역보험공사로 좀 바꿔주셨으면 하고, 다만 인지도를 중요시한…… 기업은 아니고 이게 지원기관이지 않습니까, 수출보험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자체 인지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대외 영문명칭은 필요하다면 수출을 쓰는 것도 한번 검토를 시키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해외에서 너무 한국이 수출만 신경 쓴다 그런 이미지를 바꾸겠다 이 말이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다 커버하는……

○이명규 위원 직접 대출은 한국수출입은행이 하잖아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출입보험공사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같은 명칭입니다. 수출입보험공사가 무역보험공사…… 수출과 수입을 커버하는 의미에서 무역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거든요.

○**이명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 놓은,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전혀 무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입도 커버해야 된다 그러면 ‘수출입보험공사’ 하면 안 됩니까?

○**이종혁 위원**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름이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출입’으로 하느냐, ‘무역’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큰 쟁점은 아니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유창무** 뒤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수출입보험공사’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떠한 말씀하셨는데 무역보험공사로 바꾸는 취지는 다 차관께서 말씀하셨고 수출입은행과의 관계에서 ‘수출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그런 통상 정책적 측면을 감안했을 때 ‘무역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외국에서 수출만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영문에서는 ‘수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무역’이라는 용어를 써야지.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이란 어떤 뜻입니까? 그것 한번 보세요.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의 무역의 정의가 됩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의 수출과 수입을 다 포함하는 게 무역이네,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도 의미가 있잖아요.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만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해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고가의 사치품을 우리가 보험을 해 주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통제 방법이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출보험공사의 사명을 무역보험공사로 하자는 말씀이었고……

○**이명규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고 수입을 포함하자 하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입을 포함하니까 수입 중에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국민경제에…… 저희도 수용 가능합니다.

○**이명규 위원** 그게 어디에 수용 가능합니까? 지금 무역보험법 개정안 중에 어디에 그게 수용 가능합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명규 위원** 어디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무역보험법.

○**이명규 위원** 제2조(정의)에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딱 이래 나왔잖아요. 여기에 따르는 무역이 뭐냐 하면 수출과 수입이라며?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이명규 위원** 고가품에 대한 수입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이명규 위원** 그것을 빼자는 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아니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출보험법 개정법안 제2조(정의)에 그 밖의 대외거래란 가, 나, 다 항목에 나 항목이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 이렇게 제한을 해 주는 것을……

○**이명규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누구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수출과장입니다.

○**이명규 위원** 수출과장이 법문도 모르고 가져와서 그래?

자, 봐요. 개정안 제2조 보면 제2조제1호에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여기에 수출과 수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다음에 제2호에는 ‘그 밖의 대외거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 밖의 대외거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릇 이 무역법을 바꾸자는 취지는 첫째 명칭 바꾸자, 그다음에 수입도 넣자,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사장님 맞지요?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유창무** 예.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명칭 바꾸는 것도 대중 공감대가 됐는데, 수입도 포함하자 아닙니까? 수입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같이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해 주는 거지 고가품·사치품까지 우리가 보험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뜻이 이 법에 나타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제2조(정의) 중에 ‘1. 무역이란……’ 하고 난 다음에 ‘대외무역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 중 수출과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전문위원님 의견을 수용을 해 가지고 거기다 단서로 ‘다만, 수입 대상 물품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주요 자원 및 물품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안입니다.

○**이명규 위원** 그렇지, 그렇게 넣으면 되지. 그러면 진작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그 얘기는 안하다가 내가 지금 막 이야기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정의 규정에서 무역이라는 것을 무역보험법에 맞게끔 고쳐 줘야 됩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니까 제2조(정의)의 제1호 중에 무역이란 뭐뭐 한 무역을 말한다 하고 ‘단,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

에 한한다.’ 이렇게 해 줘야지 무역법 전체 체제가 맞는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전문위원 맞지요? 그런 말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종혁 위원** 나도 간단히 한 개만 물어볼게요.

제34조의2 채권 발행 근거규정 신설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물론 채권 발행하는 것은 기금 본래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채권 발행 신설 규정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가부채 관련해 가지고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은 있지만 그러나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공기업 부채도 사실은 국가부채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OECD 평균 수준보다는 양호하다 그리고 증가 속도가 높다 이런 걱정도 있는데 제 의견은 이런 겁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자, 이게 앞으로 우리 무역에 관련되어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보험공사의 기능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은 동의를 할게요.

그런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도 같이 규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전문위원이나 차관님이나? 다시 말하면 공사의 원래 취지에 기금 활용의 목적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채권 발행해 가지고 기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막 가도 되는 거예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제한하는 요건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수보가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등 이런 제한은 일반적으로 다…… 심의·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보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여기 규정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국가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 채권 발행하는 것에 관련되는 제한 규정이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혁 위원** 하여튼 요즘에는 공기업 부채가

내가 보기에 워낙 심각해서, 채권 그냥 막 발행해 가지고…… 하여튼 지경부에서 공기업 부채 관리를 잘…… 정책 질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소위원장 노영민 지금 이사 수를 조정하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소위원장 노영민 어떻게 조정합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지금 현재 법에는 상임이사 수만 7인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운법에 의해 가지고 7인하고 비상임이사 8인으로 해서 15인 이하로 규정을 하고자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상임 7인을 둔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타 공공기관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배은희 위원 원래 상임이라고 따로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현행법에서는 상임, 비상임 구분하지 않고 7인 이내만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 취지는 공운법에 맞게, 공운법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상임이사가 상임이사보다 많도록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한도까지로 늘린 겁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야 될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사 수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라고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의 이사 수를 13인, 11인을 9인 이내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든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위원장님, 지난번에 그렇게 지침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임·비상임이사 수의 자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자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예산 규모 50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상임이사 7인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출보험공사가 금융을 취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수출보험공사하고 기보나 신보나 수출입은행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판단이 드는데, 현재 상임이사 수가 수출입은행이 7명이고요, 신보가 9명이고요, 기보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융기관과 비교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도 한 7인은 돼야 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현재 현원이 몇 명이에요? 5명이지요?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유창무 현재는 5명입니다. 6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1명을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상임이사 수가 비상임이 더 많아야 되니까, 우리 지난번에 전기안전공사라든지 또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자산이나 직원 수나 이런 것을 보면 수보보다 더 크지 않나요? 직원들이 전기안전공사 같으면 한 2000명 되는데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 수를 줄였거든요.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유창무 직원 수는 그쪽이 많습니까라는 저희들 업무의 성격이 그쪽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보다는 관리 임원 수가 좀 많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왜 많아야 되나? 설득력이 떨어지네. 금융기관이 왜 이사가 많아야 돼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위원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전기나 가스안전공사는 직원 수가 대부분이 현장의 안전 점검 인원들이 많은 인원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업무를 보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보다는 정책적인 집행, 정책적인 판단의 소지가 더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원 수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이사 아니면 정책 못 하나?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또 같은 금융기관으로서 수보나 기보 등 유사한 기관하고의 사기 문제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소위원장 노영민 현재 7인으로 돼 있는데 상임, 비상임 구분없이 7인 아녘니까, 현재 법에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현재 상임 7인으로 돼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 말이 없어요. 상임, 비상임 말이 없고 그냥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수출보험공사부사장 정태윤 수출보험공사의 부사장 정태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출보험법의 정원 7인은 원래 공공기관운영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사가 7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비상임이사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상임이사 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구분이 없이 상임을 전제로 해서 7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공공기관운영법이 만들어지면서 비상임이사 제도가 들어오고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15인 이내의 이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아무튼 지난번에 이게 얘기된 게 왜 그랬느냐면 한전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그랬어요. 한전이 직원이 2만입니다. 그리고 자산과 1년의 소위 매출 규모, 조직 규모 모든 것을 따질 때 한전이 상임이사가 일곱에 비상임이 여덟 아닙니까? 한전 같은 거대 조직이 그 정도일진대 수보가 그것하고 동등한 이사 수를 갖는 것이 맞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임이 다섯으로 되어 있다면 상임 다섯에 비상임 여섯 해서 11인이면 되겠네. 그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보다는 많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위원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입은행이 상임이 7명이고요, 신보가 9명이고 기보가 7명인데 5인은…… 한전의 예를 드셔서…… 이런 걸 가지고 타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을 6인으로 해 가지고 전체 인원을 13인으로 좀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현재 상임 다섯이라며 될 또 늘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지금 반영해 주신 수입과 관련되는 기능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종혁 위원 무역공사 일 잘 하이소.

○소위원장 노영민 13인으로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배은희 위원 이사가 13인, 감사가 1명 따로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감사야 원래 두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

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42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제7항 이병석 의원, 김정훈 의원, 김성희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안에서는 외국인투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의 규정에서 출자목적물에 상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되는 이익준비금을 포함해서 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자구정리 차원에서 이익준비금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또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는 주식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경우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부안에서는 부처별 촉진계획 및 평가보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대한 실적평가보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타당한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외국인투자 정책에 관해서,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지식경제부의 실적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가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적 제출 및 평가기관을 외국인투자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고 저희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기관을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금융회사'를 '금융기관'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병석 의원안에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의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17대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라든가 외국인투자를 억제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입법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미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해서 이런 입법취지를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반대의견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네 번째, 김성희 의원안에서는 국·공유 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정부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성희 의원안과 정부안의 차이는 김성희 의원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을 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라든가 농식품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한 특히 수자원공사에서 손실을 보전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정부안에서는 현금 지원 요건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지원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제적인 측면에서 개정안에서는 연구 인력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용 규모에 관한 내용만 삭제하고 연구 인력을 두는 것으로 자구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안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의견진술과 현장방문 협조 요청권'만

두고 있는데 '외국인투자가 등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등 권고권'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구정리 차원에서 '권고권'을 '개선 권고'라고 규정하는 등 일부 자구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옴부즈만의 위상 및 독립성을 고려할 때 고충처리기구의 장을 옴부즈만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 기구가 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서비스산업 관련 외국인투자지역 설정과 관련해서 김정훈 의원안과 정부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의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정부안과 의원안의 차이는 의원안에서는 서비스산업 관련 외투지역 중에서 그 나머지 지역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자는 거고 정부안에서는 국내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만 입주하자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의원안은 다른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부안처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자구나 체계 정비 차원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장 설립 제한을 정부안에서는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지역 중 성장관리지역에 대해서는 500㎡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허용하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역행 등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 하는 김재균 위원님의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경자구역 내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공장총량 규제를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용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구정리 차원에서 저희가 어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하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구를 정비해 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에 대해 KOTRA의 장을 외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정부안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타당한 측면은 있으나 동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일부는 공사와 관련성이 부족하고 포상금에 관해서도 공사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보다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되는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먼저 첫째, 외국인투자 인정 범위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것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일용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안을,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처별 촉진계획 및 평가보고서 신설도 역시 전문위원 보고말씀대로 외국인투자위원회로 바꾸고 자구수정 하는 데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 심의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시 국방부의 반대의견도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 바와 같이,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지금 이것을 외국인투자위원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국방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가지고 실시하는 방안으로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희 의원님과 정부안에 같이 들어 있는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범위 확대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회의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안은 도시개발법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만 지금 포함돼 있는데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하고 농어촌정비법은 국토부하고 농림부가 상당히 반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킨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김성희 의원님 안을 논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

들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저희들 안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현금지원요건 완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위원 보고말씀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권한 확대 관련도 역시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비스산업 관련 외국인투자지역 설정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안과 김정훈 의원님 안이 있는데 큰 차이는 정부안은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하자는 취지는 맞는데 김정훈 의원님 안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권자에게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김정훈 의원님 안은 지적과 같이 너무 범위가 확대돼 가지고 형평성 문제에서도 제조업과 비추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덟 번째,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 완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이후로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장총량 제한이 있고 또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이미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외국인기업인 경우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아니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문제까지도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받아들였으면 하고 현재도 국토부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을 포함하는 문제는 검토의견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정부 의견이 전문위원 검토 수정의견에 동의를 한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다만 김성희 의원님 안 중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좀 논의를 해 달라 그런 취지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다른 건 다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거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넣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반대의견을 읽어 봤더니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한 토지가 국토해양부 소관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뿐이고 별 다른 이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놓여준 정비법은 빼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당초 지식경제부의 안처럼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토지임대료를 1%로 감면할 경우에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특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기본적으로는 외국인투자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다 수의계약을 통해 가지고 약간의 페이퍼(favour)를 준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페이퍼를 주는데 산업입지 여기는 또 공기업이 갖고 있는, 개발한 것에 대해서 안 준다는 것은 또 그런 의미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인센티브는 줘야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20조4항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인데 이렇게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을 해도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와서 더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발생치 않으리라는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재 성장관리권역에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은 못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투자가 되는데 외국인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에 들어오는 이유는, 여기 투자하겠다는 이유는 관련되는 모기업에다가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막으면 외국인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가고 투자를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게 있다고 그래도 수도권에는 공장총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총량 제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균 위원** 공장총량제를 해제하는 그런……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아닙니다. 그것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준수를 해야 됩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준수해야 됩니다.

○**김재균 위원** 해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안이기 때문에 그게 풀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풀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배은희 위원** 정부안 제14조의2제1항 여기서 4호를 이렇게 고쳐서 수정의견으로 하면 한 사람이라도 연구인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너무 낮추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앞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고도기술 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이런 것을 고려하게 돼 있는 건데 석사급도 아니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연구경력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저희들이 현행은 10인 이상의 R&D 인력 상시고용으로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취지가 현금지원 하는 것을 좀 확대하자는, 그러니까 외국인기업이 현금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현금지원을 좀 확대해서 요건을 완화하자는 취지가 기본 배경이거든요. 그런 배경하에서 지금 1000만 달러 요건도 없애고 10인 이상 상시고용도 없애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배은희 위원** 상시고용이 아니라 이것은 연구인력 상시고용이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래서 1명이라도 고용하면 되는데 단순히 1명만 고용했다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캐시 그랜트를 받기 위한 다른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연구인력 관련해서 다른 요건은 없고 이것만 있잖아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연구인력과 관련된 요건은 이것만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이라든지 고도기술 수반 여부라든지 기술이전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물론 상시, 요건에 해당하는 1명이라도 고용하는 범위 내에서—그런 다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기본 취지가 완화한다는 취지도 또 감안을 하시고 그렇다면……

○**배은희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가면, 그렇다면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의문이고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부안에서는 아예 R&D 인력까지도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10인 이상뿐만 아니라 아예 상시고용 하는 연구전담 인력을 없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중복되지 않느냐,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래도 규모는, 10인 이상은 없더라도 일단 연구인력은 넣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였고 또 이 조항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더 연장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적으로 이런 수정의견을 낸 겁니다.

○**배은희 위원** 수정의견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그 취지가 살려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10인 이내가 많다면 5인 이내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 뭐 단 1명만, 서류상으로만 넣으면 될 것 같은 것을 굳이 법에 남겨 놓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전문위원의 취지가 그렇다면 이것을 수를 좀 더 늘려서 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안으로는 몇 명까지 넣으실 수 있습니까? 연구인력을 갖는 회사라야 된다는 그 조항을 남겨 놓으려면 좀 줄이더라도 인원수를 적어도 5명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안대로 가면 이 규정 자체가 너무 의미 없는 것으로 될 것 같은데요.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가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현행 규정하고 비교하면 그런데요, 저희들 취지는 이것을……

○**배은희 위원** 아예 없애고 싶으세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아예 없애려고 했던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련되는 시행령에 연구전담 상시고용 인력이 5명 이상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은희 위원** 있어요? 그것 안 없애실 거지요? 그러면 5인으로 하시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래서 5인으로 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제가 하나 물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범위 확대, 아까 이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법이 정부안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 산업법을 포함하자는 것이 이명규 위원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도 이의 없으시고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저희들도……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제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3건의 법률안은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15시05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주승용 의원과 이윤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윤성 의원안과 주승용 의원안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개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윤성 의원안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을 해외에서 공급하는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취지로써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주승용 의원안에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현행법 4조3호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것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반영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지나 다만 시행령을 그대로 법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조문체계와 자구를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과징금 상향 및 이행강제금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성 의원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개정법률안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이행강제금은 부과금액 및 절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징금이라는 것은 직접 제재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같이 병과할 수는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이윤성 의원안에서는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디다만 개정안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위탁받은 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 자료제출 요청권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불공정무역행위 개념 조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

이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과징금 상향 및 이행강제금 신설과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보고대로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 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도 자료제출 요청권과 관련되는 내용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전문위원 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玲愛 委員 이행강제금은 하자는 얘기인가요, 안 하자는 얘기인가요?

○지식경제부무역조사실장 이승재 그것은 신규로 신설하는 건데요, 이행강제금 금액을 저희는 당초 100분의 1이었는데 그것을 1000분의 5로, 너무 과중하다고 해 가지고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매 1일당 100분의 1이면 100일이면 물품 가격하고 동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배은희 위원 그런데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상한선이고.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상한선이지만……

○배은희 위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여기 ‘총 부과금액은 해당 물품 등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가 또 있잖아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이렇게 잡니까?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그렇습니다, 형평성 차원 때문에.

○배은희 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지식경제부무역조사실장 이승재 다른 법에서도 100분의 1 정도는 아니고요, 대개 1000분의 5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1000분의 3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1만분의 3, 1000분의 3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100분의 1은 상당히 과다합니다.

○배은희 위원 예.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은 위원님들의 의

건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시11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제15항 김영우 의원, 이윤성 의원, 이명규 의원, 유성엽 의원, 이종혁 의원과 정부과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11월 26일 소위를 했었고, 그때 논의됐던 사항 중에 공급의무량 상한선 등을 법에 명시하는 등 보완을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신설해서 RPS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공청회와 전체위원회 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한 시행령에 포괄위임된 사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즉 공급의무자의 범위라든

가 공급의무량의 상한 문제, 공급의무자별 의무량을 정하는 기준 등에 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해서 외국례에 비추어 한국전력거래소 등도 공급인증기관의 후보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130%로 돼 있습니다라는 실효성을 위해서 좀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고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세입 재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정부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기준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산정 기준을 현행 ‘총 건축공사비’ 기준에서 ‘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정부안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제 변경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윤성 의원안과 이종혁 의원안에서는 유사석유제품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3조에 의해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신·재생에너지가 배제될 염려가 있으므로 의원안처럼 동 조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이명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서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처분 가능하도록 하고 토지 외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지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구시설물 축조를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와도 협의가 완

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유성엽 의원 안에서는 일정한 석유대체연료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별도로 이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개정안에 대한 수정 조문대비표를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동안에 위원회 심사를 여러 번 해 주셨고 또 공청회도 해 주신 의견을 조사관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대부분 제기해 주신 내용들을 공급의무자 의무량 상한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다 반영, 수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지금 안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내가 한 가지 물을게요.

공급의무량이 총 전력생산량의 10%잖아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상한이.

○이종혁 위원 상한이.

그러면 우선 이 상한 10% 정도면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만한 적정선이라고 보세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10%를 2030년이 돼도 넘어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 에너지사용량의 10%를 신재생…… 지금 현재 2.43%인데요.

○이종혁 위원 그리고 또 공급의무량을 총 전력생산량의 10%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발전사업자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외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할당해서 들어오는 것도 그게 포션이 10%란 말이죠?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10%면 적당하다?

그리고 여기 법률안 관련되어서 내가 수정의견

이나 이런 데 다 동의를 하겠는데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 FIT제도 이것 지난번 공청회 때도 내가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FIT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책적 목적을 다 거두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우리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굳이 나열 안 해도 아실 거고요.

RPS제도도 원래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끔 기술 개발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난 FIT제도와 마찬가지로 그 제도를 소위 말해서 악용이라고 내가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단지 발전차액을 뜯어먹는, 국가 원래의 정책목표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그런 유의 소위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오히려 국가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돼, 정책자금은 정책자금대로 소진되고 그냥 봉이 김선달 식 그것 뜯어먹는 그런 사례가 안 되도록 이걸 철저히 잘 좀 관리하고 하십시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수정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김재균 위원 태양광 등에 공급의무량 할당 및 공급인증서 발급 시 가중치 부여한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청회 의견을 반영했다 해 가지고 ‘경제성이 낮은 태양광 등에……’ 20페이지에 있는데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아, 이거는 RPS제도로 가면 발전회사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서 발굴하는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태양광이 풍력이라든지 타 발전원에 비해서 발전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발전회사들이 태양광을 안 하고 값싼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은 태양광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충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김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발전사업자가?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발전사업자가요.

○소위원장 노영민 예, 그렇지요. 가중치를 좀 부여해 주고,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이 법은 1년을 끌어온 법입니다, 다 아시지만. 그동안 했던 FIT제도를 RPS

제도로 변경하는 제도이고, 그동안 FIT사업에 참여해 왔던 많은 사업자들이 신중한 법안의 검토를 요구했던 그런 법안이었지 않습니까? 1년 정도 동안 정말 여러 번 우리 소위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해 와서 상당 부분 수정했고, 우리 소위 위원들도 대충 이제는 만족스러운 상태까지 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제1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래 의원 대표발의)

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운환 의원 대표발의)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19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제20항 최철국 의원, 조경태 의원, 조진래 의원, 성운환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5건의 법률안은 법사위에 동일 제명의 개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음 소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시21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법도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첫째, 발전용가스 도입·판매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자료 추가적으로 좀 이래 가지고 조사도 하고 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주셨으면……

○소위원장 노영민 내부적으로 토론도 해 보지요.

○이종혁 위원 예, 토론도 더 해 볼 필요가 있고.

○배은희 위원 이 법 관련해서 정부에 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이 법 관련해서 검토를 하려고 자료를 요청을 하면 투명하고 좀 확실한 자료를 앞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실제적 진실에 부합된 자료를 달라 그 말입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백데이터를 요구해서 받아보면 조금 오차가 나는 경우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아, 예.

○배은희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사실에 기반한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이런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자료를 가져와요. 자료를 주면서 ‘이건 공식 자료입니다.’ (웃음소리)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성 의원 대표발의)

2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15시24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김동성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과 주승용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2개의 개정법률안은 보유자산 활용사업을 한전의 목적사업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자산 개발사유 및 사업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사업방식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또 직접 개발보다는 위·신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한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보유자산의 대상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므로 '보유부동산'으로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한전의 부동산 개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승용 의원안에서는 개발사업 수행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마는 자구수정차원에서 일부 조문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승용 의원안에서는 개발사업 수행시 발생한 수익금을 전력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력사업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발생한 수익금의 용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30페이지는 시행일과 관련해서 공포 후 3개월인데 이것은 공포 후 6개월로 세부규정 마련 등을 위한 시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이러한 여러 위

원님들의 의견과 국가의 공기업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만든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다 고려를 해서 수석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고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안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이건 한전의 본사 매각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전 본사 매각 문제하고는.

○김재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이명규 위원 수정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종혁 위원 나도 대체적으로 수정의견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정리된 것 같아요.

○김재균 위원 어쨌든 다른 문제이기는 하나 한전 본사부지 매각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이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아, 물론이지요, 그것은.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電氣工事共濟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15시28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첫째, 조합의 목적사업에 수익사업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합 사업범위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복리향상 관련 사업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조합의 건전한 수익구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비상근이사 수의 증원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이종혁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12년에 손보사의 보증 시장 참여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추가해야 되는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전문위원 보고대로 과도한 수익사업 차익을 위해서 차입을 불가하는 제한을 두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비상근이사 수의 증원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31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제27항 최철국 의원, 정진석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정부안에서는 부분완성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업에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정부안에서는 고압가스의 사후 수입 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리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차원에서 제안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본문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특례조항이라는 성격에 맞게 부칙으로 두는 것이 법제원리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정진석 의원안에서는 양벌규정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작년 9월 달에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마는, 이미 5월 달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동법 개정 시에 반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최철국 의원안에서는 특정고압가스의 부적합한 사용금지 및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사용방법을 규제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 취지와 부합하는지 또는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형벌을 두는 것이 형벌의 명확성 요구에 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런 의견에 의해서 지난번부터 소위에 계류되었던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첫 번째 사항,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부칙으로 규정하자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 사항은 보고드린 바와 같고,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방법을 규제하는 것이 이 법에 맞다는 의견에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玲愛 委員 4항은 정부나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이 고압가스 사용방법이 도대체 원칙적인 사용방법, 용도가 뭔지 이것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는 건지, 이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명규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6항은 2009년 5월에 동 법률이 개정되면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2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15시33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제33항 정병국 의원, 홍재형 의원, 김기현 의원, 우제창 의원, 노영민 의원, 임동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병국 의원안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위임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작년 1월 30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되어 국무총리 소속에서 지경부장관으로 소속을 변경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법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홍재형 의원안에서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 평가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의 위원회의 통합·운영 등에 대한 최근의 위원회 정비 방안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입법취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평가 기능의 보완이라는 기능을 현행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흡수하는 입법방안은 고려가 가능하겠다는 의견이고요.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우제창 의원안에서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다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우려됩니다.

즉 에너지소비효율은 높으나 에너지소비 대비 운송효율이 낮은 소형 승합차나 소형 화물차의 판매 비중을 높이기 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사회 전체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미국이나 EU 같은 데서도 이런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김기현 의원안에서는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보다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임동규 의원안에서는 에너지관리자 선임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자 선임의무는 지난 19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업의 자율고용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폐지되었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다시 재도입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마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또는 필요한지 여부 등을 살펴서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김기현 의원안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 목적 및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적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외에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을 에너지기후변화공단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전체위원회에서 말씀하시고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견은 기후변화 업무에 대한 주관부처 결정을 두고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경부와 환경부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별 업무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 보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노영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서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신청에 의한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조치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모든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를 생략하는 것보다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덟 번째, 임동규 의원안에서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준수 확인을 위한 조사권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현행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조항과 출입·검사권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권은 새로운 행정수단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우제창 의원안에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임동규 의원안에서는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액수에 관해서는 너무 좁, 특히 임동규 의원안 같은 경우 자동차회사의 매출액 10%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전경련에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첫 번째 절약추진위원회 문제하고 둘째 사항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평가위원회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평균에너지 적용대상을 승합차하고 화물차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 말씀 외에 또 다른 어떤 나라도, 현재는 승용차 말고 승합차에 대해서 연비제도를 운영하

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업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 쪽의 에너지관리자 선임의무 관련해서 임동규 의원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제도를 시행하다가 97년 경제위기 상황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어졌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 환경을 둘러싼 저희들 여건에 비추어 가지고는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는 기업에 에너지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경련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서포터즈를 활용해 가지고 중소기업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이고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이, 에너지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약 19%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기업 중에서. 그래서 19% 보유하지 않은 이 대기업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근무 경력이라든지 교육이수 프로그램 등 자격 기준을 융통성 있게 해 가지고 기업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최소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리자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여섯 번째,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역시 기후변화 업무의 주무부처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에너지관리공단을 기후변화공단으로 고친다고 해 가지고 기후변화 업무가 100% 지식경제부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좀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환경부는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지지를 해 주셔서 기후변화관리공단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곱 번째 등록취소 시의 청문절차, 노영민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임동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준수 확인을 위한 조사권 허용 관련해서도 수석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제창 의원님이 하신 과정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과정금이 전경련의 의견을 봐서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저희들 받아들여서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한 결과 현재 과정금을 2%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지금 전문위원실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2%면 높은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업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질의보다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얘기할게요.

우선 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평가위원회 신설 수정의견 검토보고 반영하겠다 하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얘기하는데, 앞으로 비단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평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정책결정 부서에 붙어 가지고 만날 무슨 압력단체 비슷하게 아니면, 물론 선기능으로 하는 게 많겠지만 이런 것들이 달리 이용되어지는 경우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는 정책 혼선이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정치적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는 요구에 따라 가지고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흔들려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번에 지적했던 경주방폐장도 근원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가 잘못됐는데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 좀 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녹색성장기본법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CO₂ 측량 관리 이런 것들을 환경부가 하느냐 지경부가 하느냐, 제가 지경위원회 소속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볼 때 국익 차원으로 보면 우리 지경부가 맡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본회의 때 ‘지경부가 그런 대시보드, 측량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시스템

을 먼저 전략적으로 선점하라’ 그런 얘기도 그런 차원에서 드린 거고, 이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는 어떻게 하든지 환경부를 잘 설득해서 지식경제부 쪽으로, 더욱이 지금 현재 카본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도 관심 갖고 1년 이상 죽 지켜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합의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CO₂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나 아니냐, 그런데 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는 엘고어 노벨상 받은 것을 가지고 조롱소리가 나올 정도로, 도로 온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유도 있고, 사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혹은 현 정부가 CO₂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소위 대외적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절대적인 보호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식경제부가 CO₂ 배출에 관련되어 가지고 무조건 업계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들의 주의주장을 편을 들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가 가져올 수 있도록, 저는 그게 국가의 경쟁력이나 카본 관리 효율도 맞다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잘 하십시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CO₂를 측정하는 것은 워낙 환경부랑 붙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CO₂를 측정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98%, 대부분의 나라가 에너지사용량을 가지고 일정 보정계수를 곱해서 산술에 따라 CO₂가 얼마 나온다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식경제부 논리는 CO₂ 온실가스의 기업에 대한 관리를 지식경제부가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사용량 이퀄 CO₂배출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환경부는 이에 맞서서 에너지사용량은 지식경제부가 하지만 CO₂가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측정을 해 가지고 환경부가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굴뚝마다 한 대당 세우는데 2억씩 돈이 들고요. 전 세계, 하다못해 CO₂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EU에 있어서도 0.2%만 실험적으로 CO₂에 측정 대시보드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된 논리

가 굳이 기업에 부담되는 측정장치를 각 공장마다 둘 것이 아니고 에너지사용량, 보정계수, CO₂ 배출량 이것은 모든 나라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정책을 하는 부처에서 CO₂ 감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환경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업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들이 좀더 분발을 해서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래요, 그것은 꼭 지경부가 가지고 오세요.

○배은희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에너지관리자 선임의무 신설 관련해서 기업이 CO₂ 감축의무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다 해 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나 그런 것이 들어가는 거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CO₂ 감축 어떤 방법으로든 해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데 굳이 또 에너지관리자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관리자가 하는 일이 에너지관리기준 준수하는 것 이런 것을 보는 거거든요. 감축을 위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이것은 보고 안 해도 기업들이 의무할당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부에서 할 겁니다.

그것을 갖고 에너지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는 규제를 뒤서 이중적으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관리자는 우리가 과거부터 죽 해 가지고 기업에 해 왔던 제도가……

○배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수단을 쓰든 누구를 고용해서 하든 의무량이 할당되면 그것을 해 내면 되는 거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CO₂를 측정하는 장치를 기업이 가져가게 하는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CO₂ 계산하신다고까지 했는데 그런 취지라면 각 기업이 에너지관리자를 또 하나씩 뒤서 그런 비용이 같이 가게 하는 것은 지경부 입장에서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규정이 없어도 의무할당량 같은 게, 감축량 같은 게 기업한테 부과가 되거

든요. 그러면 그 기업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해 내면 되는 거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것을 기업한테 또 이렇게 법에다가 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필요 없는 조항 같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을 정부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관심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CO₂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를 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2013년 내에 되어야지만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기업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에너지 절약할 거 아니냐 이런, 물론 그런 원칙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배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표를 주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두는 거지 그것을 어떤 방법을 써서 하라는 것을 법에 명시하는 게 여태껏 있습니까? 관리자 선임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타 선진국의 예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배은희 위원 이것을 기업 규제……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는 일본도 각 기업마다 우리보다 엄격한 에너지관리자를 두고 있고요……

○이종혁 위원 안 하겠다는 거지요?

○배은희 위원 아니, 정부는 해 달라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노영민 에너지에 관련된 선진 시설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하자는 거예요?

○이종혁 위원 아니, 왜 기업에서 그런 부담을 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관리와 관련되는 에너지 절약 필요성이라든지 우리 기업이 대비토록 하는 그런 수요가, 필요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배은희 위원 이중규제 같아요.

○이종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정부가 CO₂, 에너지 이런 부분에 관한 구축 또 체크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할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이종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경부로 갖

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개별적 기업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에너지이용 합리화하고 거기에 따른 CO₂ 감축하려고 다 몰아갈 텐데 옛날 이런 조항을 또 여기에다가 ‘관리자를 뒤라’라는 규정을 뒤 가지고 기업한테 부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배은희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35페이지 1번과 2번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받아들이고 정부 측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3번은 전문위원, 정부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4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그리고 37페이지 에너지관리자 선임의무는 전문위원의 신중한 검토 필요를 받아들이기로 우리 위원회가 결정했고, 여섯 번째 에너지관리공단 설립목적과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리고 38페이지 7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받아들이고 8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 잠깐만요. 하기 전에 7번 빼놓고, 7번은 내가 한번 물어볼 게 있어서……

○소위원장 노영민 8번은 입법적 실익이 없어서 이것은 그렇게 하고 9번에 대해서는 아까 정부하고 전문위원이 2%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명규 위원 7번에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법문을 아무리 찾아 봐도 의미가 애매한데 지금 수정의견의 취지가 뭐냐 하면 신청에 의한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청문회를 생략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런데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확한 방법으로 인한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청문회를 생략하자는 게 수정의견입니까?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지, 그런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넣어야 된다.

○이명규 위원 오케이. 그러면 수정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내지 제33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를 잠시 바꿔서 중기청 관련 법률안을 심사한 이후에 유통산업발전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5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15시58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 손숙미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소기업청 소관 심사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숙미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 위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보면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과 같이 할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 대부분이 지원 대상이 되므로 재원 부담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나 또는 직장보육시설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와의 중복 지원 등 관계 부처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겸임·겸직 가능한 자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법상의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같이 하면 고급 인력의 중소기업 유

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보면 한국과학기술원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이나 연구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같은 성격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법적 성격이 동일한 기관임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대학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상 연구원이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휴직 가능 규정하고 휴직기간, 불이익 금지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산·학·연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과 고급 연구인력의 원활한 교류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법적 성격이 동일함으로써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일부 체계·자구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두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희 위원 첫 번째,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지금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을 운영까지 넣는 것은 반대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전문위원 문병철 예.

○배은희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지원해도 되지 않나요?

○이종혁 위원 아니,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위탁하는 경우를 반대한다는 거지.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직접 운영은 지금도 해주고 있고요, 위탁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하고 이런 데서 예산상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배은희 위원 아니, 개정안에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는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잖아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러니까 이번의 개정안이 운영에 대한 근거를 여기서 마련해 준 것이고요, 운영은 이미 이 개정안에 보면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위탁까지도 포함하려고 했더

니 위탁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배은희 위원 그러면 수정의견 대비표는 어떻게 되지요?

○전문위원 문병철 심사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수정안은 지금 운영만 하는 겁니다.

○배은희 위원 됐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16시01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심사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술혁신 도입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 사업에도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은 기술혁신 능력을 보유한 기업만 출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혁신 능력이 아직 미흡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행하에서는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일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개정안과 관련하여서 한정된 재원상 기술혁신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국가 재정이 많아서 이렇게까지 해 줄 수 있다 그런다면 바람직스럽기야 하지, 그렇지만 이런 혁신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좀 너무 도입 단계에서 모호한, 머리 꼬랑이가 어딘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까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전문위원 의견이 나는 일리 있다고 봐요.

○**李玲愛 委員** 저도 동의합니다.

○**김재균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16시04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심사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기업활동 제 분야에서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은 균등한 보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안과 같이 우선하여 부여할 경우에 장애인의 창업활동 및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장애인 기업에 우선 보장을 강제할 경우 비장애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분야의 특성 및 현실적 제약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우선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희 위원**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현행보다 후퇴하는 것 아니에요?

○**이종혁 위원** 우선 보장해야 되니까 균등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 거지요.

○**배은희 위원** 아니, 균등은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노력하여야 한다니까……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우선이니까.

○**이종혁 위원** 균등은 기본이고 우선되도록 노력하라 그 말이지.

○**李玲愛 委員** 균등은 뭐 당연히 하는 거고, 그것 안 하면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이고.

○**소위원장 노영민**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16시06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심사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이 개정안 내용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기 반영되었으므로 지금 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
-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은 2009년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폐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소위원장 노영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21)(계속)
- 4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

- 원 대표발의)(계속)
- 4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1.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조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56.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이시중 의원 등 61인 발의)(계속)

○소위원장 노영민 의사일정 제34항 내지 제50항 그리고 의사일정 51항, 52항, 53항, 54항, 55항, 56항 등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내지 제5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재균 노영민 배은희 이명규
이영애 이종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전문위원 문병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지식경제부
제1차관 임채민

제 2 차 관	김 영 학
무역조사실장	이 승 재
중 소 기 업 청 장	홍 석 우
한국수출보험공사	
사 장	유 창 무
부 사 장	정 태 윤